

1. 개정이유

해양 오염물질의 방제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한 형식승인 등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해양 오염물질 방제를 위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권한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66조, 제67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제72조의6, 제72조의7, 제72조의8)

- 해양 오염물질 방제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등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

나. 해양 오염물질 방제를 위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정비 (안 별표 29)

- 기술능력 중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의 선후관계를 명확화하고 시험 설비 및 장비기준을 개정(‘20)된 성능시험 기준(고시)을 반영하여 개정

* 자격기준 중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법제처)

다. 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 인상(안 별표 32)

라. 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권한 위임에 따른 관련 서식의 처리 기관명 및 서류 발급자 등 명칭 개정(안 별지 제58호서식, 제58호의2서식, 제60호서식, 제60호의2서식, 제62호의2서식, 제64호의2서식, 제65호의2서식, 제66호의2서식, 제66호의3서식, 제67호서식, 제68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수수료 인상 관련 기재부 합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연구센터”로 한다.

제72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① (생략)	제66조(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자재·약제의 규격 등을 변경(해당 자재·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 서류를 <u>해양경찰청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u>해양경찰연구센터장</u>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해양경찰청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u>해양경찰연구센터장</u> ----- -----.

1. ~ 2. (생략)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자재·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1조(자재·약제의 인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약제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

1. ~ 2. (현행과 같음)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

제71조(자재·약제의 인정)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1. (현행과 같음)

2. -----

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것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약제

② 제1항에 따라 자재·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 기준)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터장-----

② -----

-----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72조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 · 약제의 성능인증)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자재 · 약제를 제외한 자재 · 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 · 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제72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 · 약제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 · 약제 성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제72조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 · 약제의 성능인증)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② -----

-----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1. ~ 3. (현행과 같음)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 ----- 해

양경찰연구센터장-----

-----.

④ 해양경찰연구센터장-----

⑤

해양경찰연구센터장

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인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종류, 제작사,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증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

⑦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해양경찰연구센터장-----

③ (현행과 같음)

④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
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 3. (생략)

⑤ (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오염방
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의6(형식승인대상외 자재
·약제의 검정) ① 법 제110조
의2의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10조의2제3항
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
외 자재·약제 검정신청서를 해
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형식승인대
상외 자재·약제를 검정한 결과
가 제72조의2제4항에 따른 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
지 제66호의2서식의 형식승인

---- 해양경찰연구센터장----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해양경찰연구센터 -----

제72조의6(형식승인대상외 자재
·약제의 검정) ① -----

----- 해
양경찰연구센터장-----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

대상외 자재·약제 검정합격증
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
당 자재·약제에 별표 25의2에
따른 성능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2조의7(형식승인대상외 자재
·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의2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을 취소
하려면 미리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
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
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
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예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2차 예고통보한 소명
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
면 인증을 취소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인증을 취소

-----.

- 제72조의7(형식승인대상외 자재
·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 ④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

----- 해양경찰
연구센터장-----.

1. 2. (현행과 같음)

② -----
---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1. 2. (현행과 같음)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9]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제7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 4명 이상이 있을 것

가.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표의 전공과정과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하고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공과정: 화학·화공·자원·산업·환경·고분자·생물·미생물·해양학·해양환경)

나. 공업고등학교에서 다음 표의 전공과목과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공과목: 화학·화공·자원·산업·환경·고분자·생물·미생물·해양학·해양환경)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개월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자격: 화공(공업화공)·산업안전·공정관리·안전관리(화공안전)·생산관리·해양환경·해양조사·해양공학·생물공학)

2. 시험설비 및 장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9]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제7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 4명 이상이 있을 것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다음의 전공과정과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공과정: 화학·화공·자원·산업·환경·고분자·생물·미생물·해양학·해양환경)

2)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졸업하기 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다음의 전공과목과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공과목: 화학·화공·자원·산업·환경·고분자·생물·미생물·해양학·해양환경)

2) 2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졸업하기 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개월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직무 분야	화공·화공안전·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해양	화공·화학분 석·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해양환경·해양공학	위험물·산업안전·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해양조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실이 있을 것

가. 유처리제

- 1) 인화점
- 2) 운동점성계수
- 3) 유화율
- 4) 계면활성제의 생분해도
- 5) 생물에 대한 독성
- 6) 중량 및 비중
- 7) 색도

나. 유흡착제

- 1) 온도
- 2) 흡착량
- 3) 흡수량
- 4) 진동시험
- 5) 내유성
- 6) 중량
- 7) 강도
- 8) 소각시험
- 9) 동정시험

다. 유겔화제

- 1) 인화점
- 2) 운동점성계수
- 3) 겔화율
- 4) 포집율
- 5) 겔화유의 함수율
- 6) 유겔화제의 회수성
- 7) 수용성성분의 생분해도
- 8) 생물에 대한 독성
- 9) 소각시험
- 10) 중량 및 비중
- 11) 색도

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 1) 치수검사
- 2) 부유시험
- 3) 인장강도시험
- 4) 기실의 누설시험
- 5) 내유성
- 6) 내후성(국·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행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기실의 내압시험

마. 생물정화제제

- 1) 생물에 대한 독성
- 2) 유류분해능 시험

2. 시험설비 및 장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시험항목

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실이 있을 것

가. 유처리제

- 1) 인화점
- 2) 동점도(운동점성계수)
- 3) 유화율
- 4) 생물에 대한 영향시험
- 5) 밀도
- 6) 유동점
- 7) 색

나. 유흡착제

- 1) 온도
- 2) 흡유량 시험
- 3) 흡수량 시험
- 4) 진탕시험
- 5) 강도시험
- 6) 인장시험

다.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

- 1) 인화점
- 2) 동점도(운동점성계수)
- 3) 겔화율
- 4) 포집율
- 5) 유겔화제의 회수성
- 6) 생물에 대한 영향시험
- 7) 겔화유의 함수율

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 1) 겔모양 검사
- 2) 치수검사
- 3) 재질검사
- 4) 접속부 검사
- 5) 부유시험
- 6) 인장강도시험
- 7) 기실의 누설시험
- 8) 내유시험
- 9) 내후시험

마. 생물정화제제

- 1) 생물에 대한 영향시험
- 2) 유류분해 성능시험
- 3) 기타시험(영양염 농도, 단백질 농도)

3) 호흡률 시험

4) 총미생물수 측정시험

5) 단백질농도

6) 영양염농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2]

수수료(제83조제1항 관련)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3,000원

2. 삭제 <2012.6.27>

3. 삭제 <2024. 6. 28.>

4.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및 형식승인대상의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자재·약제의 종류	성능시험		검정	
	수수료	단위	수수료	단위
해양유류오염확산 차단장치	232,000	원/1회	2,000	원/20m
유처리제	1,990,000	원/1회	2,000	원/18ℓ
유흡착제	413,000	원/1회	2,000	원/10kg
유겔화제	1,687,000	원/1회	2,000	원/10kg
생물정화제제	2,867,000	원/1회	2,000	원/18ℓ

비고

1.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에 드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회의 출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간을 고려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3.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설치되어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4. 형식승인대상의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는 상기 자재·약제의 종류 중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2]

수수료(제83조제1항 관련)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3,000원

2. 삭제 <2012.6.27>

3. 삭제 <2024. 6. 28.>

4.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및 형식승인대상의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자재·약제의 종류	성능시험		검정	
	수수료	단위	수수료	단위
해양유류오염확산 차단장치	440,100	원/1회	2,600	원/20m
유처리제	3,775,800	원/1회	2,600	원/18ℓ
유흡착제	783,400	원/1회	2,600	원/10kg
유겔화제	2,272,000	원/1회	2,600	원/10kg
생물정화제제	3,862,100	원/1회	2,600	원/18ℓ

비고

1.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에 드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회의 출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간을 고려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3.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설치되어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4. 형식승인대상의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는 상기 자재·약제의 종류 중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해양오염방제 자재 · 약제 형식승인

[]변경
[]면제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설비의 경우에는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한글	영문 (전화번호:)
	품명	한글	영문
	형식		
	영업소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제작 · 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 · 면제)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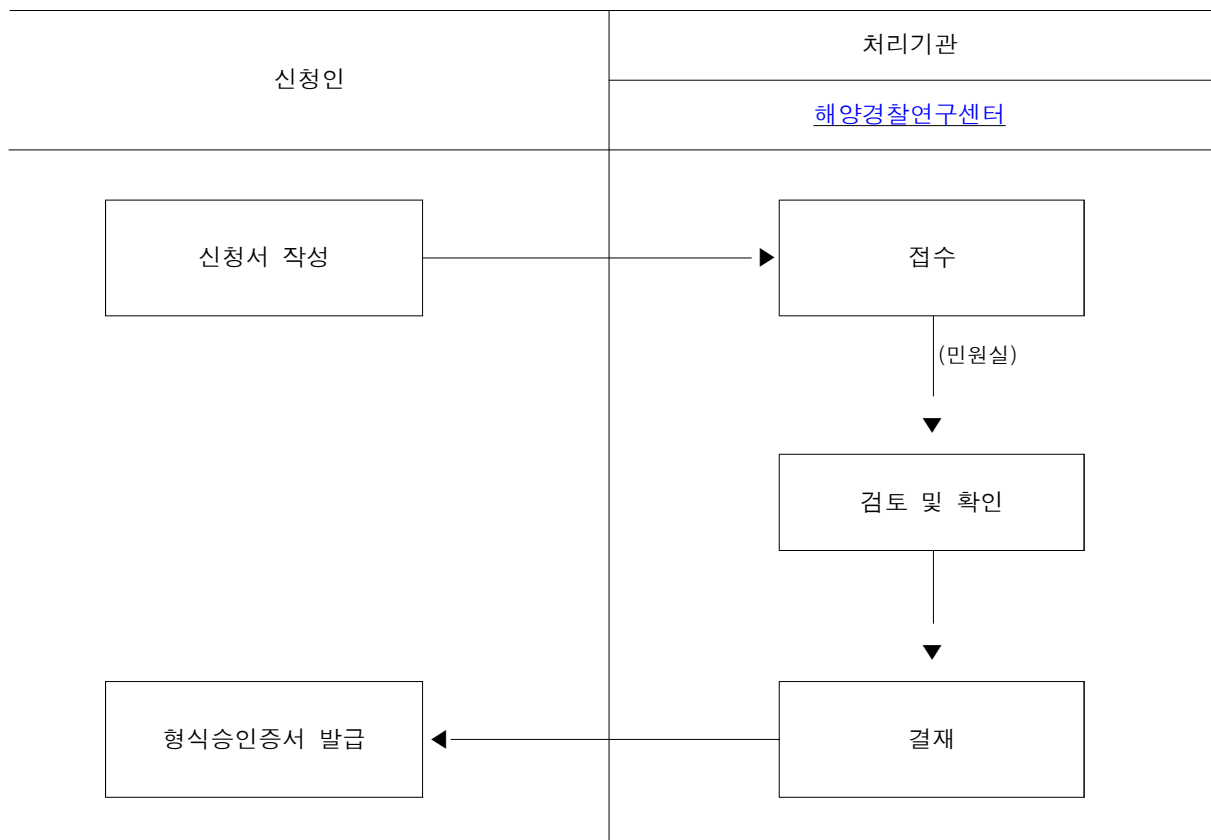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최초신청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변경신청	1. 형식승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제신청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시험 · 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개정 2017. 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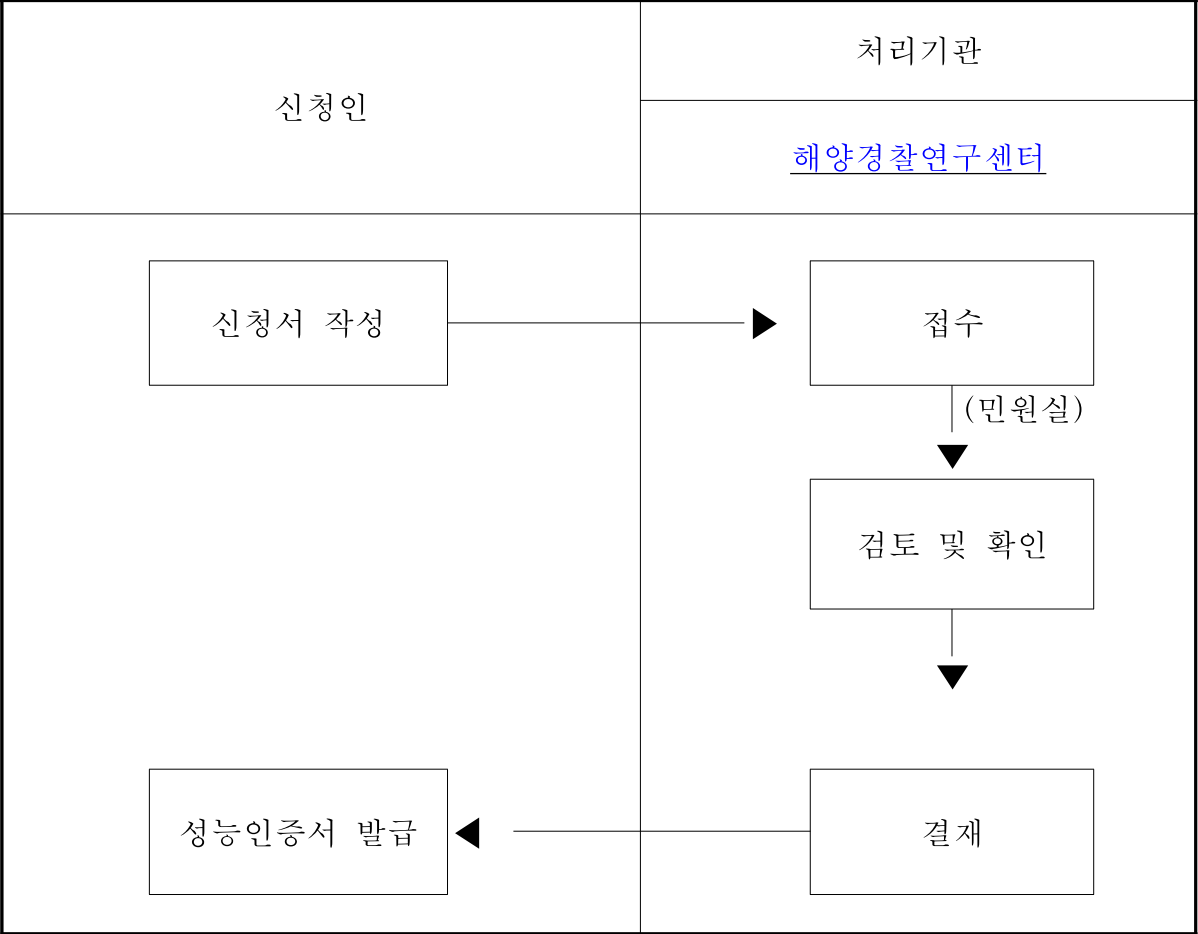
(앞쪽)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신청서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한글		영문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한글			
		영문			
신청내용	⑥ 제작사			⑦ 제작국	
	⑧ 자재·약제의 종류			⑨ 형 식	
	⑩ 상품명(고유명칭)	한글		영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u>해양경찰연구센터장</u>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없음
1. 사양서 1부.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제 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1. 주된 영업소: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3. 자재·약제의 품명:
4. 자재·약제의 형식 및 규격:
5. 자재·약제의 성능시험성적서

번호:

발급연월일: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형식승인의 변경>

연 월 일	변경사항	변경조건	근거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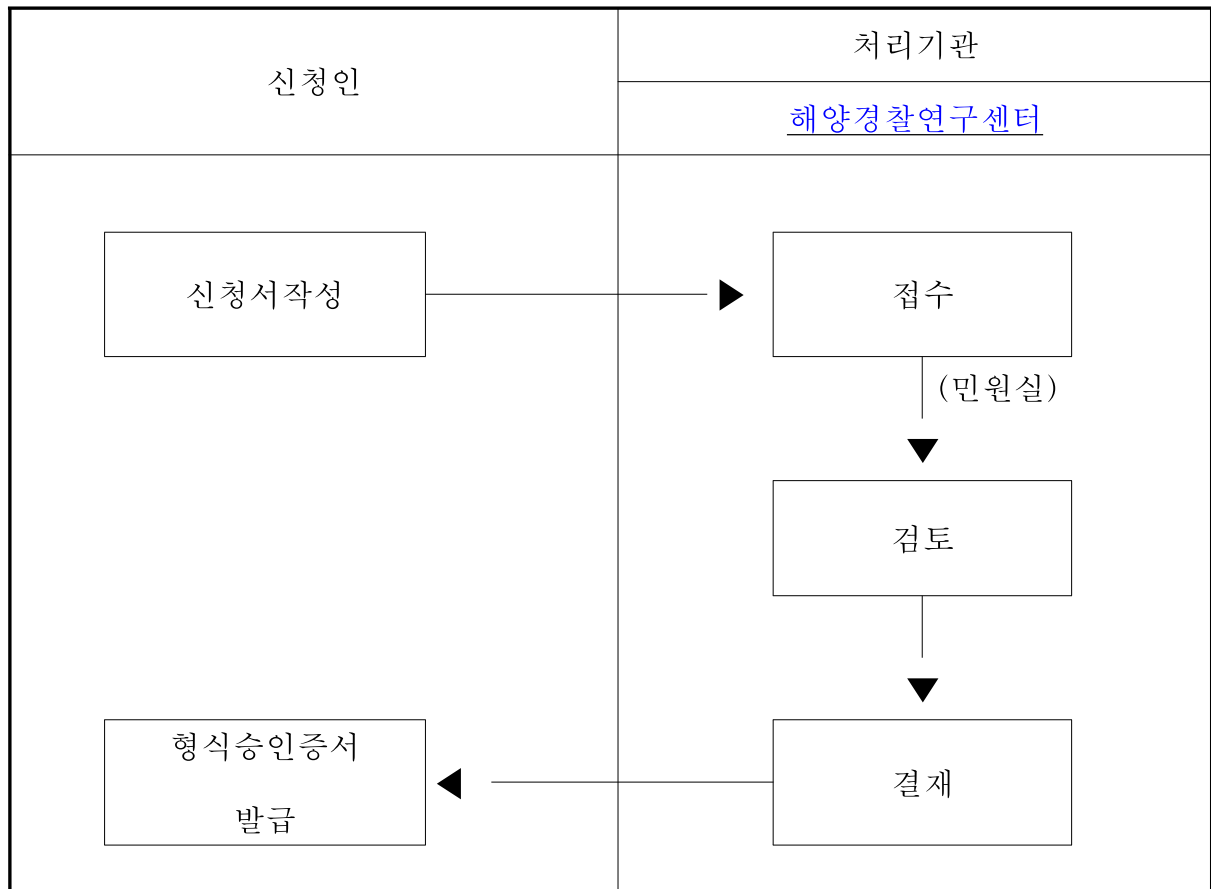
[별지 제60호의2서식] <개정 2017. 7. 28.>

성능인증번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서			
제 호					
① 상호(사업장명칭)		한글		영문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⑤ 사업장 소재지		한글			
		영문			
인증 내용	⑥ 제작사			⑦ 제작국	
	⑧ 자재·약제의 종류			⑨ 형식	
	⑩ 상품명(고유명칭)	한글		영문	
⑪ 성능인증 성적서		발급기관		발급연월일	
		발급번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인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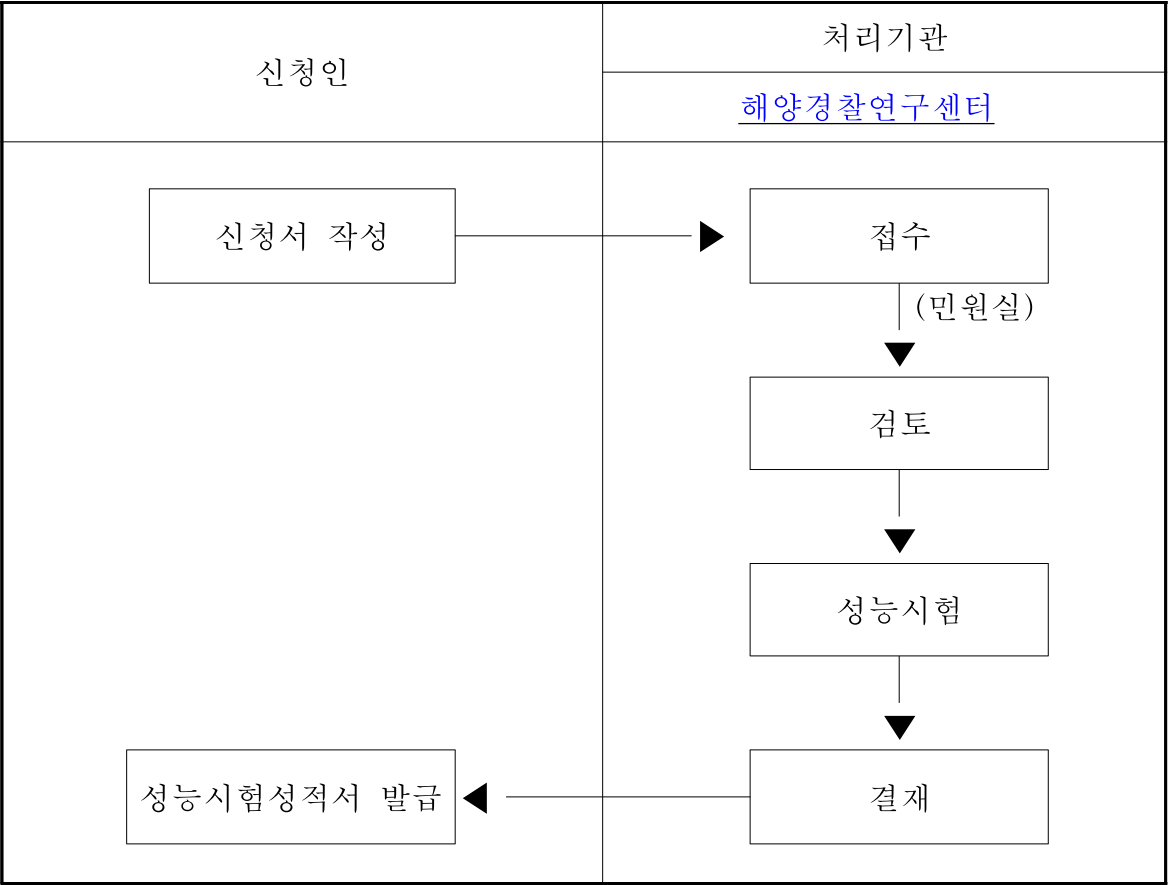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시험신청서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한글			
		영문			
신청 내용	⑥ 제작사		⑦ 제작국		
	⑧ 자재·약제의 종류		⑨ 형식		
	⑩ 상품명(고유명칭)	한글		영문	
⑥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장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5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양서 1부				수수료
	2. 구조도면 및 사용설명서 1부				제83조제1항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64호의2서식] <신설 201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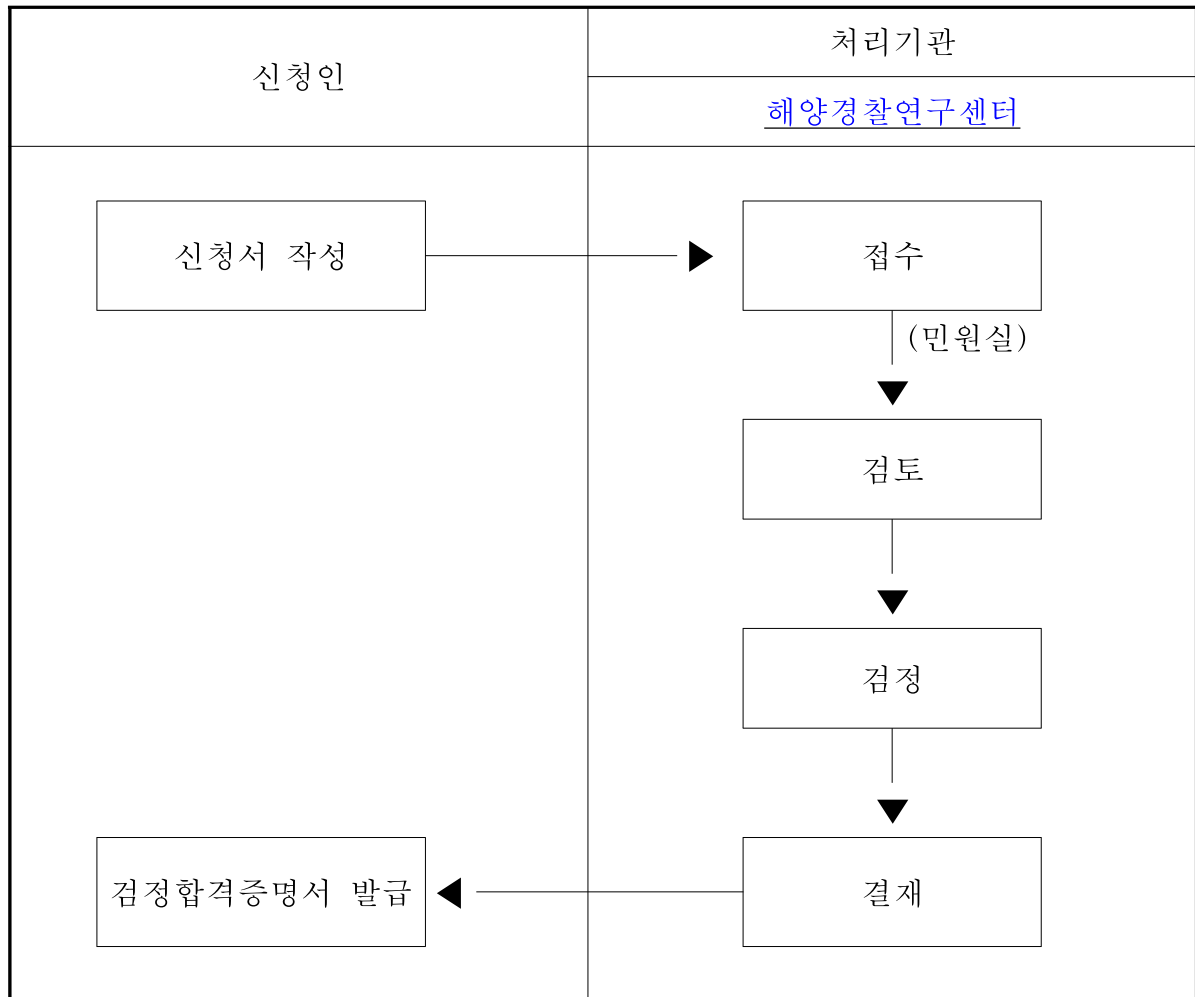
번 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시험성적서			
제 호					
① 회사명				전화번호	
② 성명(대표자)					
③ 주소					
자재 · 약제	④ 종 류				
	⑤ 형 식				
	⑥ 상품명(고유명칭)	한글		영문	
	⑦시험방법				
	⑦시험결과	“별첨”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5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u>해양경찰연구센터장</u> 인					

(앞쪽)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제 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 · 약제 검정합격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 THAN TYPE APPROVAL SUBJECT

1. 품명:

(Name of Article)

2. 형식 및 규격 :

(Type · Size · Capacity)

3. 수량:

(Quantity)

4. 성능인증번호:

(Performance Certificate No.)

5. 형식승인연월일:

(Date of Approval)

6. 제작(수입)자 성명:

(Name of Manufacturer or Importer)

7. 제작(수입)자 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or Importer)

8. 제작(수입)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or Import)

9. 제작번호:

(Serial No. of Manufacture)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6에 따라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the Article 72-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년(Y) 월(M) 일(D)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인)
(The Chief of Korea Coast Guard Research Center)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자재·약제 형식승인 을 받은 자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양도인, 피상속인, 합병 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권리·의무 승계일		
권리·의무 승계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8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또는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서의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신고인
---------------	---	-----	---	-----	---	-----	---	------------

처리기관: 해양경찰연구센터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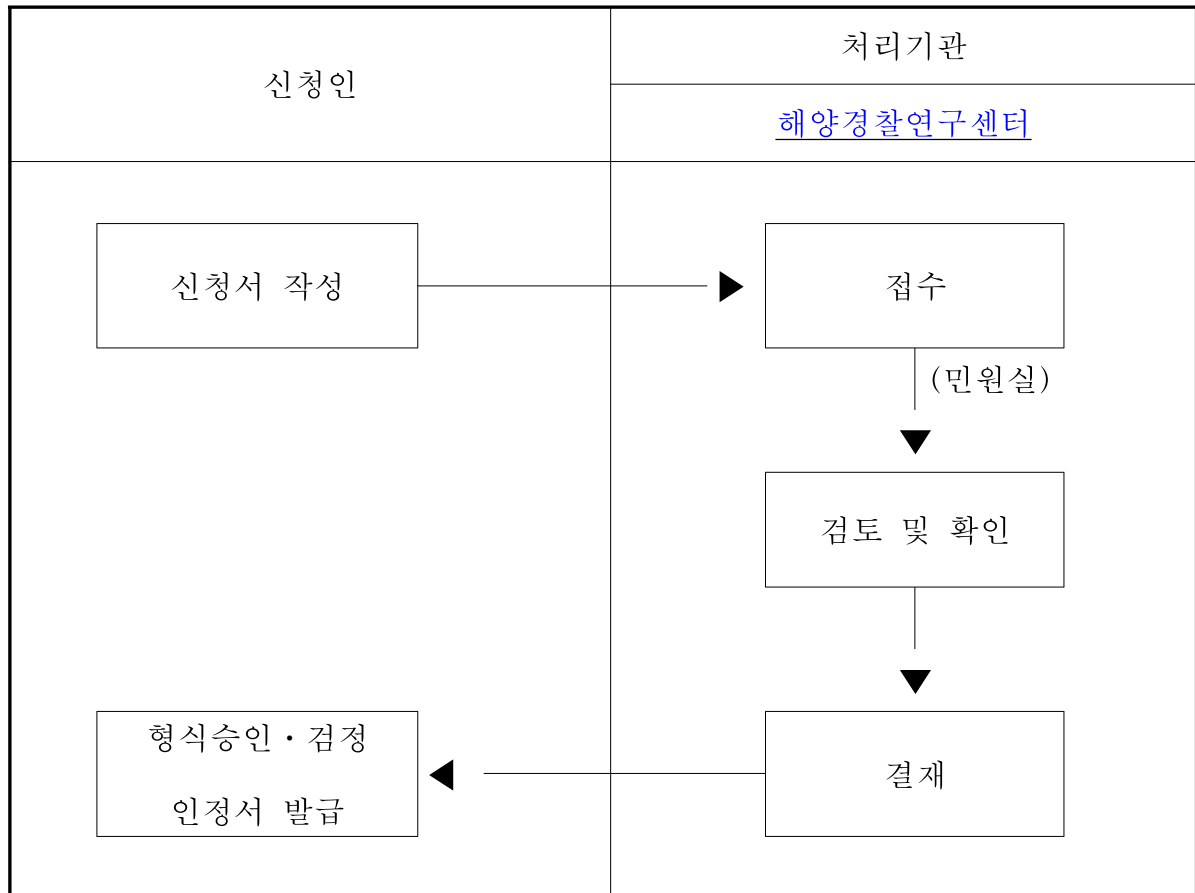
(알쫘)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품명	한글		영문				
형식				규격			
형식승인 협약당사국	국가명		승인기관				
	승인품명		승인번호				
	제작회사		제조번호				
비치 선박명				선박번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자재·약제에 대한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u>해양경찰연구센터장</u> 귀하							
구비서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제 호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인정서

1. 선박명:
2. 선박번호:
3. 품명:
4. 형식:
5. 용량또는규격:
6. 협약당사국 :
7. 협약국 승인기관:
8. 협약국 형식승인번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을 받은 자재·약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연구센터장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